

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서상열입니다.

-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5호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코로나19 이후 E-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
증가하고 새벽·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
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.

- 최근 정부에서는 이 같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심 내 새
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「물류
시설법」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2월 17일부터
본격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
되어있는 상황입니다.

- 이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상에도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